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26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이경숙 의원(1명)
찬 성 자 : 김규남, 김지향, 남궁역, 문성호, 박ㆍ석, 박춘선, 신동원, 옥재은, 윤기섭, 윤종복, 이병윤, 이상욱, 이종배, 장태용, 최호정, 황철규 의원(16명)

1.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이용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제3호)

나. 안전운행, 주차질서 이행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다.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 이용자격 확인 등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운영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및 운영
4.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신 설>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운영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및 운영 4.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문 서 번 호	2023092500000002

비 대 상 사 유 서

요 청 인 : 이경숙 의원	담 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 수 일 : 2023.09.25.	
회 신 일 : 2023.09.26.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개인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